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26 선고 2019가단5094171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 등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24 선고 2021나540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26 선고 2019가단5094171 판결

전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

담당변호사 장경수

피 고 한국국제협력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현

담당변호사 박상능, 정호선

변 론 종 결 2020. 10. 22.

판 결 선 고 2020. 11. 26.

주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63,342,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10. 28.부터 2020. 11. 26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40%는 원고가 부담하고,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98,802,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10. 23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4. 12.경 피고의 'B사업'의 기자재 공급업체로 선정되었고, 2015. 2. 6. 피고와 위 사업에 관한 기자재 구매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총 계약기간: 2015. 2. 6.~2016. 2. 5.

- * 국내 납품기한: 2015. 4. 10. 이내
- * 현지구매 납품기한: 수원국 설치기한과 동일(현지검수 포함)
- * 설치기한: 수원국 도착(통관완료)일로부터 30일 이내

<일반조건>

제1조(정의)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8. "계약기간"이란 수원국과 관련된 사유 및 기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인해 사업이 연기될 수 있음을 감안한 기간으로 본 계약의 표지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.

제15조(계약의 해지 및 해제)

② 원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계약서상의 납품기한(또는 연장된 납품기한) 내에 원고가 계약서에 정한 규격의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

4. 원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정될 경우

5. 원고의 직원 및 고용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한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의 직무수행을 방해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

10. (생략)

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
<특수조건>

제1조(목적)

이 사건 계약의 일반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특약사항을 규정한 것이며, 계약의 일반조건에 우선하여 계약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.

제2조(대금지급)

②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금지급의 비율은 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다.

1.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납품하는 조건으로 현지에 설치가 없는 경우 국내 검수완료(합격)에 따라 기자재 해당금액의 100% 지급

2.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납품하는 조건으로 현지에 설치가 있는 경우 국내 검수완료(합격)에 따라 기자재 해당금액의 80%, 현지 검수완료(설치를 포함한다)에 따라 기자재 해당금액의 20% 지급

3. 1호, 2호와 달리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납품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현지 검수완료(설치를 포함한다)에 따라 해당금액의 100% 전액 지급

4. 기자재 납품 외의 별도 과업이 있는 경우 해당 과업의 수행계획서를 먼저 제출하여 피고의 승인을 득한 후 80%, 해당되는 과업의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확

인판정을 득한 후 잔금 20% 지급

제3조(물품의 납품)

원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기로 한다.

1. 납품기한: 계약서 표지의 납품기한에 따름

2. 최종도착지 (또는 물품인도 장소): 피고 국내 지정장소

3. 운송방법: FCA(해외운송 협력단 비용부담)

8. 물품설치: 물품공급계획서에 따라 물품의 설치를 진행하고, 설치 후 수원국 및 피고의 최

종검수를 필하여야 함

나. 원고와 피고는 2015. 5. 7.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을 1,079,405,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.

다. 피고는 2015. 10. 22. 원고의 기자재 현지설치 및 현지기자재 구매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2항 제1, 4, 5호에 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해지통보를 발송하였고, 2015. 10. 27. 그 해지통보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.

라.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3052호로 손해배상(기)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,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피고의 계약해지는 부적법하고,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이행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미지급된 물품대금 상당액 299,691,336원(총 계약금액 1,079,405,000원 - 지급받은 대금 779,713,664원)의 지급을 구하였다. 위 법원은 2018. 2. 2. 피고의 계약해지는 적법하고, 피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은 2015. 10. 27.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후,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5호증, 을 제 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인도한 국내구매 기자재 대금은 오토카드 구매대금

35,460,000원을 포함한 880,811,000원이고,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한 국내구매 기자재 대금 중 미지급된 금액 98,802,706원(= 880,811,000원 - 782,008,924원)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8,802,706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인 2015. 10. 23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도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

- 1) 원고이 이 사건 청구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.
- 2) 이 사건 계약에서 현지 설치가 필요한 국내구매 기자재의 대금은 현지 검수완료 이후 대금의 20%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데, 원고는 현지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국내구매 기자재 대금의 20%를 청구할 수 없다.
- 3)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설치를 명시한 계약으로 원고의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. 이 사건 소는 사건 계약이 해지된 2015. 10. 27.부터 3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.

3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- 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5. 10. 27. 해지되었는바,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고 해지 이전의 채권채무 관계는 유효하므로 원고는 계약해지 전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(이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주장하나,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‘해지’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명백하고 원고는 이미 인도한 기자재의 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며 지급시기를 피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 다음날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계약상 대금지급 청구를 하는 것으로

선택한다).

국내구매 기자재의 대금 중 오토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이 845,351,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845,351,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인 782,008,924원을 제외한 나머지 63,342,0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다음날(이 사건 계약에서 국내구매 기자재의 경우 설치가 끝난 후 잔금 20%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,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금지급의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고, 피고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기한의 도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계약이 해지된 날 대금지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)인 2015. 10. 28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. 11. 26.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오토카드 대금 35,460,000원이 국내구매 기자재 대금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후 해당 업체의 정책변경으로 제품을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액에서 오토카드 대금을 감액할 수 없고, 오토카드는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미 피고에게 인도되었으므로 피고는 오토카드 대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갑 제3, 7, 8호증,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계약은 각 물품별 단가 및 수량이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대금이 산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공급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.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1)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대금의 20%는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

갑 제3, 7, 8, 36, 37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계약은 총 계약금액이 1,079,405,000원이고, 그 세부내역으로 국내구매 기자재 대금 880,811,000원, 현지구매 기자재 대금 157,051,400원, 설치비 41,542,600원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, 국내구매 기자재 대금은 품명, 규격, 제조사, 수량, 단가가 개별 물품마다 정해져 있었던 사실, 국내구매 기자재

중 오토캐드는 해당 업체가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자 피고가 국내구매 기자대 대금에서 오토캐드 해당 금액을 제외하겠다고 통보한 사실,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“기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납품하는 조건으로 현지에 설치가 있는 경우 국내 검수완료(합격)에 따라 기자재 해당금액의 80%, 현지 검수완료(설치를 포함한다)에 따라 기자재 해당금액의 20%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, 국내구매 기자재대금과 별도로 기자재의 설치비를 책정하고 있는 점, 각 물품별로 수량과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대금의 총액을 국내구매 기자재 대금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, 물품의 공급계약은 상대방에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면 이행이 완료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에서 정한 ‘설치를 포함한 현지 검수완료’는 잔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.

따라서 원고가 국내구매 기자재의 인도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설치를 포함한 현지 검수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, 계약이 해지된 때 국내구매 기자재의 잔금청구권의 이행기도 도래하였다.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

원고가 전소에서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한 국내구매 기자대 대금 지급 청구이므로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. 또한 피고는 전소의 판결이유 중 “피고가 부당하게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볼 수 없다.”고 판시한 부분을 들어 원고의 대금지급청구는 전소 기판력에 저촉된다고도 주장하는데, 확정판결의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.

3)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

이 사건 계약은 물품 매매계약과 현지설치작업과 관련된 도급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,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채권은 매매계약에 의한 대금지급청구권이므로, 도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볼 수 없다.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남수진